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19 선고 2022가단233323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수원지방법원 2024. 5. 2 선고 2023나73472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 5. 19 선고 2022가단233323 판결

전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언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은미

변론종결 2023. 4. 7.

판결선고 2023. 5. 19.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2021. 7. 30.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0년대 초반부터 D, E 부부에게 합계 9,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C는 D, E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 E이 위 차용금 중 7,830만 원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D, E, C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차전2205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D, E,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8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2020. 10. 15. C에게 송달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2020. 10.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남편인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7.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처인 C, 자녀들인 피고와 G이 있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1. 7. 30.경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성남시 분당구 H건물 제3층 I호 및 J호(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 중 각 1/2지분을 G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9. 30. 접수 제4632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한편,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C에게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과 이 사건 각 상가의 1/2 지분에 관한 상속분(3/7 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임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실제로는 망인 사망 전인 2016년 여름 무렵에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관한 제척기간 5년이 지난 후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상속개시 이후에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의 상속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로써 효력을 가질 수는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은 ‘2021. 7.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점에 비추어 보면, C와 피고가 망인이 사망하기도 전에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하여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원고의 C에 대한 연대보증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이전받은 사람이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4701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들은 각자의 상속분대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는데, C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7 지분을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가 중 3/14 지분(= 망인의 공유지분 $1/2 \times 3/7$)을 G에게 무상으로 각 이전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항변에 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여 그 선의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결국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3/7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소영

부동산 목록

1. 성남시 수정구 K 대 122.3㎡

2. 성남시 수정구 K

[도로명 주소] 성남시 수정구 L

연와조 스라브 2층주택

1층 및 2층 각 67.18㎡

지층 90.71㎡

지층 대피소 및 보일러실. 끝.

